

부설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직제규정

제정 2026. 02 .04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부설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운영규정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(이하 “문기평”이라 한다) 조직 및 구성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문기평의 조직 및 구성원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2 장 조 직

제3조(조직) ① 문기평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두며, 그 조직도는 별표 1과 같다. 다만, 문기평 원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 조직 산하에 세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
1. 경영전략본부
2. 연구개발사업본부

② 문기평 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한시적인 조직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문기평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기평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정원) ① 문기평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.

② 부서별 정원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문기평 원장이 정한다.

제 3 장 직원 등

제6조(문기평 원장) 문기평 원장은 문기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, 문기평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제7조(부서장) ① 각 본부에는 본부장을 두며, 본부장은 문기평 원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도·감독하며, 소관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② 본부 내에는 팀을 둘 수 있으며, 팀장은 본부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도·감독하며, 소관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제8조(직원) 문기평 직원은 정규직원, 공무원, 계약직원으로 구분하며 세부 사항은 「부설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인사규정」으로 정한다.

제9조(보임) 부서장 및 직원의 보임은 「부설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인사규정」을 준용한다.

제10조(권한의 위임) ① 문기평 원장은 문기평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서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문기평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1조(직무대행) ① 문기평 원장의 부재 또는 유고 시에는 문기평의 직제 순에 따라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 문기평 원장이 직무대행자를 따로 지명한 때는 예외로 한다.

② 부서장의 부재 또는 유고 시에는 소속 직제 순에 따라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4 장 업무 분장 등

제12조(업무분장) 부서별 업무 분장은 문기평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13조(감사업무의 수행) ① 문기평의 재산 상황 및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임감사가 수행한다.

② 문기평 원장은 제1항의 상임감사를 보좌하기 위한 부서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14조(정원의 근로자) 문기평 원장은 문기평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원 외에 계약제 근로자 등을 고용할 수 있다.

제15조(보칙)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26.02.04)

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정원표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제1호>

조직도



<별표 제2호>

정 원 표

(단위: 명)

구 분	정원		
	정규직	공무직	계
정 원	25	4	29